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B-1BL)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B-1BL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지하2층~지상25층, 3개동 총 441세대 중 잔여 9세대(전용면적 84㎡B 7세대, 전용면적 84㎡C 2세대)**

■ 단지 주요정보

대표번호 : 1800-044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 청약 불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3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9.08.)로부터 3년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8.21.(금)	2026.11.18.(수)	2026.11.23.(월)	2026.11.30.(월)	2026.12.01.(화)	2026.12.04.(금)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800-0441)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이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8.)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에서 청약 마감된 주택형이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인천검암역세권 B-1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주관업체 안내

■ 사업주체 : 인천도시공사 / ㈜대우건설 / 동부건설㈜ / ㈜비에스한양 / 경화건설㈜ / 브니엘네이처㈜

■ 시공업체 : ㈜대우건설 / 동부건설㈜ / ㈜비에스한양 / 경화건설㈜ / 브니엘네이처㈜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8.(수)**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 구성원, 거주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92**이며, 이 공고문은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및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21.(금) 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04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서류접수일 및 계약체결일에만 가능하며, 그 외 기간에는 전화상담(주말·공휴일 제외)만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은 단위세대 60C/84A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되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순위(사후)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 동일주택 기당첨자, 공급질서 교란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구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무순위)	O		X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 정	2026.11.23.(월)	2026.11.30.(월)	2026.12.01.(화)	2026.12.04.(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Home)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견본주택 - 주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249-52 (어울로 75)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별도 안내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등)을 받으니,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라도 부적격 또는 부정당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해구는「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조정대상지역이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계약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8조에 따름)

대상증서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 : 도급에 관한 증서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하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며, 계약체결 시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 및 인지세 부담액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사업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주택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B-1BL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지하2층~지상25층, 3개동 총 441세대 중 잔여 9세대(전용면적 84㎡B 7세대, 전용면적 84㎡C 2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잔여 세대수	잔여동호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동	호
2026910292	01	084.4783B	84B	84.4783	27.4804	111.9587	68.0663	180.0250	60.6681	7	102	303, 1303
											103	803, 1003, 1203, 1903, 2003
	02	084.9219C	84C	84.9219	27.6192	112.5411	68.4238	180.9649	60.9867	2	101	204, 1304
	합 계									9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세대 내부벽체 면적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지하코아),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은 가감속차선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29년 7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 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4783B	084.9219C
약식표기(타입)	84B	84C

3. 공급금액 (분양대금)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동(라인)	층별	금회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 시 (5%)	계약 후 15일 이내 (5%)	1회(10%) 2027.05.19.	2회(10%) 2027.10.19.	3회(10%) 2028.03.17.	4회(10%) 2028.08.18.	5회(10%) 2028.12.19.	6회(10%) 2029.04.19.	입주지정기간	
													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주택도시기금
084.4783B	102동 3호 103동 3호	3~5층	1	605,900,000	30,295,000	30,295,000	60,590,000	60,590,000	60,590,000	60,590,000	60,590,000	60,590,000	106,770,000	75,000,000
		6~10층	2	615,800,000	30,790,000	30,79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109,740,000	75,000,000
		11층 이상	4	629,40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113,820,000	75,000,000
084.9219C	101동 4호	2층	1	587,200,000	29,360,000	29,36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101,160,000	75,000,000
		11층 이상	1	623,400,000	31,170,000	31,170,000	62,340,000	62,340,000	62,340,000	62,340,000	62,340,000	62,340,000	112,020,000	75,000,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타입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은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b/2026/pravenue) 등에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인지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전용,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인천도시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신한은행	100-038-919762	인천도시공사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 분양대금 중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 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신한은행 100-038-919762, 예금주 : 인천도시공사)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

■ 발코니 확장공사비 안내

※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세공과금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또한 '마이너스옵션'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	계약 시(10%)	2027.05.19.(10%)	입주시(80%)
84B	6,276,000	627,600	627,600	5,020,800
84C	7,126,000	712,600	712,600	5,700,800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각 주택형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신한은행	100-038-919805	인천도시공사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 발코니 확장비 중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 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신한은행 100-038-919805, 예금주 : 인천도시공사)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 내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견본주택,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선택 시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각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계약자 대상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체결일정 추후 안내)
※ **주택형별 동·호 타입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 및 설치위치 등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계약체결기간(추후 별도안내) 내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 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대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의해 형태, 재질, 사양, 색상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견본주택 또는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시기에 따른 최신모델 변경 요청이 불가하며,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격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결정기간 이후 선택품목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표 상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른 마감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구의 형태, 크기, 칸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및 배선기구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 및 배선기구는 미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1) 라이프업 스타일링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현관 중문	1안	미설치	2안	3연동 자동중문	84B/C	2,010,000	-

※ 현관 중문 기본형(1안) 선택 시 중문 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자동형으로 현관에서 세대로 진입 시 자동으로 열리고, 세대에서 나갈 시에는 별도의 버튼으로 작동하며 개별적인 속도 조절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센서 및 버튼의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등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공간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 시 자동 중문용 전원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벽/바닥 마감재 특화	1안	1. 거실 아트월 타일(600X600) 2. 실크벽지 3. 강마루(섬유판)	2안	1.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2.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3. 복도/소파 뒷벽 시트판넬 4. 광폭강마루(섬유판)	84B	5,530,000	-
					84C	5,630,000	-

※ 본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및 광폭 강마루(섬유판)의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및 소파뒷벽의 시트판넬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와 같이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 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마감재 두께에 따른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부위별로 규격, 나누기, 시공 상세 등이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일부 타입, 일부 구간에 시트판넬(목창호 케이싱 연장)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는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본 공사 시 세라믹타일의 제조사, 패턴 및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조명특화	1안	1. 기본 조명기구 2.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2안	1. 특화조명기구 : 거실 레일 조명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 주방, 침실1,2,3)	84B/C	1,320,000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스펙, 설치수량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조명기구는 유상옵션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옵션을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 평면선택 옵션/유상 선택 옵션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됩니다.
※ 조명특화 선택 시에만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미선택 시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의 음성인식 기능은 침실에 한해서 구현 가능하며, 마이크와의 거리 및 방향에 따라 음성인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에 안내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2) 라이프업 수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현관 수납특화	1안	1. 신발장 : 기본형 2. 현관 창고 : 여닫이 도어 3. 현관 바닥 : 타일(600X600)	2안	1. 신발장 특화 : 오픈장(조명포함) +디자인선반(조명포함)+신발장 하부조명 2. 현관 창고 특화 : 폴딩도어 +벽판넬 시스템선반 3. 현관 바닥 : 대형타일(600X1,200)	84B	2,240,000	-
	1안	1. 신발장 : 기본형 2. 현관 바닥 : 타일(600X600)	2안	1. 신발장 특화 : 오픈장(조명포함) +디자인선반(조명포함)+신발장 하부조명 2. 현관 바닥 : 대형타일(600X1,200)	84C	930,000	-

※ 현관 수납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합니다.

※ 현관 수납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84B타입 현관 창고 내 선반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선반(조명포함)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현관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 및 가구도어 열림 방향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드레스룸 특화	1안	여닫이 도어	2안	1. 3연동 슬라이딩도어 2.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3. 천장형 제습기	84B	4,540,000	-
					84C	3,520,000	-
드레스룸 특화 (천장형제습기)	1안	미설치	2안	천장형 제습기	84B/C	780,000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선택시 별도 선택가능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여닫이 도어는 확장 시에만 제공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평면에 따라 포켓도어 설치로 인해 벽체가 돌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 시스템선반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서랍장 포함 여부 및 선반의 위치와 구성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미건립타입은 공간에 따라 선반 수납량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디자인 시스템선반은 조명포함 디자인이며, 평면에 따라 설치 수량 및 위치가 상이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가야/KY-1005P)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의 설치위치는 드레스룸 특화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함께 설치되는 품목으로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침실3 붙박이장	1안	미설치	2안	침실3 붙박이장	84B	1,200,000	-
					84C	1,270,000	-

※ 침실3 붙박이장 선택형(2안)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3 붙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3 붙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팬트리 특화	1안	여닫이 도어	2안	폴딩도어 + 폴대형시스템 선반	84B	1,120,000	-
					84C	1,130,000	-

※ 팬트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팬트리 내 시스템 선반은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벽체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 팬트리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 부위 및 규격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다용도실 특화	1안	습식 다용도실 1. 바닥 : 기본타일(300X300) 2. 손빨래 수전	2안	건식 다용도실 1. 바닥 : 레벨 변경 및 대형타일(600X600/ 세탁기 설치부위 제외) 2. 로봇청소기 급배수용 공배관 추가 3. 손빨래 수전 미설치	84B	250,000	-
					84C	160,000	-

※ 타입별로 다용도실 레이아웃에 따라 바닥레벨 변경 구간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 시 세탁기 설치부위는 바닥 레벨이 다운되어 설치되며 바닥대형타일 적용구간은 주방과 동일한 레벨로 시공됩니다.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바닥 난방 구간이 상이하며, 로봇청소기 급수용 공배관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로봇청소기 급배수용 공배관은 추후 배관을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비어있는 배관입니다.

3) 라이프업 키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주방특화	1안	1. 평면 : 'ㄷ'자형 주방 2. 벽 : 국산타일(300X600) /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3. 국산 싱크수전 + 와이드 싱크볼 4. 주방 기본 액세서리 : 걸이형 액세서리+기본형 수저분리함	2안	1. 평면 : 'ㄷ'자형 주방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4. 주방 특화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5.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84B	2,870,000	-
					84C	2,850,000	-

※ 주방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수납장의 구성, 세부 형태(규격, 하드웨어, 액세서리 위치 및 사양)가 상이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후드 및 싱크볼, 싱크수전의 제조사, 규격 및 세부사양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디자인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사출형 싱크볼과 걸이형 악세서리가 시공되며,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별로 특화 품목 구성 및 적용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수저분리함의 규격 및 설치위치, 미드웨이 ACC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및 스위치는 본 공사 시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 디테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구간으로 인해 본 공사 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길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되며, 후면에 전선 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의 조명특화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가 결정되며 주방 특화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1안) 선택 시 싱크수전이 절수기능 통합 제품으로 별도의 절수 제어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이 설치되며, 싱크절수 기능을 위한 제어기가 싱크장 하부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방특화 옵션 기본형(1안)과 선택형(2안)의 싱크절수기 센서의 규격, 제조사, 사양 등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1안	미설치	2-1안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84B	1,260,000	-
					84C	850,000	-
			2-2안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84B	920,000	-
					84C	520,000	-
			3-1안	3컬럼 패키지 냉장고(삼성/새틴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84B	6,500,000	-
					84C	6,330,000	-
			3-2안	3컬럼 패키지 냉장고(LG/미스트크림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84B	6,400,000	-
					84C	6,230,000	-

※ 주방 냉장고장 및 키큰장의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냉장고 가전 옵션 선택 시 상부장의 형태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의 배치 및 냉장고 상부장 형태,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는 LG전자(BC1L2AA/BC1F2AA/BC1K3AA), 삼성전자(RR40C7995AP/RZ34C7865AP/RQ34C79(8)45AP) 제품으로 설치됩니다.(도어 좌우 변경에 따라 모델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의 마감패널은 글라스 재질의 미스트크림화이트(LG전자) 또는 새틴화이트(삼성전자)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3컬럼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패키지로 구성되며 냉장고의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전기쿡탑	1안	가스3구 쿡탑	2안	일반형 / 쿠첸 / CIR-BB310TOB1	84B/C	650,000	-
			3안	고급형 / 디트리쉬 / DPI-4320WK		2,250,000	-
전기오븐	1안	미설치	2안	삼성전자 / NQ50T8539BW	84B/C	1,160,000	-
			3안	LG전자 / MZ941CLCAT		850,000	-
식기 세척기	1안	수납장	2안	삼성전자 / DW80F75K1UAP	84B/C	1,550,000	-
			3안	LG전자 / DIE6PT		1,580,000	-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선택 시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기쿡탑(2안)은 3.4kW / 전기쿡탑(3안)은 7.4kW 전력제어 모델이며, 추가 전기공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기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제조사 : 경동나비엔/GRB-5003)
※ 식기세척기의 전면 패널의 마감재는 2안(삼성전자) : 새틴화이트, 3안(LG전자) : 가구마감으로 설치되며, 패널색상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식기세척기는 일반형 및 고급형 선택에 따라 하부 걸레받이 시공여부, 형태, 마감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공상 이미 시공된 하부장가구 및 상판 등과 틈새, 하부장 문짝과 높이 단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제조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쿡탑의 제조사 변경, 형태, 사양, 마감판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라이프업 바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욕실특화	1안	1. 벽 타일 (300*600) / 바닥 타일 (300*300) 2. 욕조수납형 에이프런(욕실2) 3. 국산 수전 4. 국산 도기 (세면대/ 양변기) / 전자비데(욕실2) 5. 욕실 기본 액세서리 6. 접합유리 샤워부스(욕실1)	2안	1. 유럽산 대형타일: 벽(600*1,200)/바닥(300*600) 2. 욕조측면 타일마감(욕실2) 3. 고급형 수전 4. 고급형 도기(세면대/비데일체형양변기) 5.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6.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욕실1)	84B/C	5,590,000	-
욕실 포켓도어	1안	욕실1 스마트욕실 도어 공틀	2안	욕실1 스마트욕실 포켓도어	84B/C	1,360,000	-

※ 욕실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욕실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코너선반의 형태는 욕실특화 옵션형(2안)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바닥 배수구의 위치,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은 타일 마감으로 변경되어 수납공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타입 욕실1은 본 공사시 세면대 배수관로 설치를 위해 세면대 하부장 뒷판과 지판이 미설치 되며 전면 가림판에 의해 수납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4타입 욕실 포켓도어 미선택 시 스마트욕실(건식 세면대 공간)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며, 공틀로 시공됩니다. 건식 세면대 공간과 욕실 사이에는 여닫이 도어가 설치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 고
욕실 복합환풍기	1안	미설치	2안	욕실 복합환풍기 (2개소)	84B/C	1,300,000	힘펠

※ 욕실복합환풍기 기본형(무상) 선택 시 일반형 욕실배기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유상)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형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모드에 따라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리모컨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며, 무선리모콘은 설치 개소당 1개 지급됩니다.(힘펠/FHD3-C150P_LUMI)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전(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조사	약식표기(타입)	선택	실내기 대수	설치장소	금액	비고
삼성전자	84B/C	2안	2대	거실 + 침실1	3,650,000	-
		3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650,000	-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조명기구 위치, 감지기 위치,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어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선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컨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스탠드형) 및 침실1(벽걸이형)에는 선냉매배관과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스탠드형)에는 선냉매배관이 설치되고, 침실1(벽걸이형)에는 선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준공 후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에 대해서는 월패드를 통한 제어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해당 옵션의 설치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실(침실, 알파룸 등)에 대해서는 선냉매배관,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6) 가전(시스템청정환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조사	약식표기(타입)	선택	실내기 대수	설치장소	금액	비고
삼성전자	84B/C	2안	2대	거실 + 침실1	1,980,000	-
		3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각 실에 설치되는 장비 용량은 설치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장비 동작 시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환기 디퓨저의 위치 및 개수,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 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장비 1대당 무선리모컨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옵션안에 포함되지 않은 침실에 대해서는 장비 설치를 위한 환기배관, 콘센트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10%	계약 시	1005-204-967540	우리은행	㈜대우건설
중도금	10%	중도금1차 (2027.05.19.)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잔금	80%	입주 시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우리은행 1005-204-967540, 예금주 : (주)대우건설)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계약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체결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체결 최종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명칭이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격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통사항**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실외기실 문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디지털도어록(현관), 기본형 PL창호, 다용도실 도어,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강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월패드)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돌림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무선AP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립형 조명등기구, 비상조명등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약식표기(타입)	84B	84C
금액	37,567,000	37,763,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연차합의 시 해당부분은 채권양도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 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쿡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비확장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며 난방코일, 난방분배기, 급배수 위치 등이 확장형과 상이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수도꼭지, 양변기 등은「수도법」상 절수기준과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관련 인증조건에 적합한 절수등급 표시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급수·급탕·배수·난방·가스배관 및 환기·배기덕트를 임의로 이전·축소·폐쇄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에 따른 입주자 가스 조리기구 및 가스배관·밸브의 설치·변경은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안전점검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기존 소방시설(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을 임의로 철거·이동·훼손할 수 없습니다. 벽체·천장·가구 추가로 감지 또는 살수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이전 또는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스 또는 전기 조리기구와 렌지후드를 설치하는 경우 열원 종류에 적합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열원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연동기능은 사업주체 시공분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별도 설치한 제품은 홈네트워크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에 따라 입주자가 별도로 설치한 렌지후드는 전열교환기와 자동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동을 원하는 경우 제품 간 호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 조리 시 창호 또는 외기유입구를 개방하여 부족한 외기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무순위(사후) 공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8.)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Ⅲ 신청 시 확인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검색대상</td><td>■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td></tr>
<tr><td>주택의 범위</td><td>■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td></tr>
<tr><td>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td><td>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⑨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r><td>제53조 제9호 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
<tr><td rowspan="3">제53조 제9호 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
<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
<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
</table>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⑪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td></tr>
</table>

Ⅳ 신청일정 및 방법, 유의사항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무순위(사후) 공급	2026.11.23.(월)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Home)**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당일 인증서 설치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무순위(사후) 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자는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를 통한 공급주택형별 평면도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공급주택형별 평면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및 공급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순위(사후) 공급 접수결과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30.(월) ~ 2026.12.09.(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30.(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안내 등

1.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구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계약체결 (당첨자)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일시	**2026.11.30.(월)**	**2026.12.01.(화)** (10:00~17:00)	**2026.12.04.(금)** (10:00~17:00)	추후 일정 별도 안내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249-52 (어울로 75)**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 공지 및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순번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명단 및 예비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위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입주자의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8.(수))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 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8.)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일반공급	O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용도 : 서류접수 및 계약 / 제출처 : 검암역푸르지오 프라베뉴)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및 세대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및 세대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O		가족관계증명(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배우자 또는 세대원	• 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으로 지정)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O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적격 통보 받은 해당자		O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주택공급 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필수)(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O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O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8.(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본인만)**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① 파견 및 출장명령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①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영공증 첨부 필수
	O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와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상기 단신부임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8.(수))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O		계약금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용도 : 서류접수 및 계약 / 제출처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가**
	O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 견본주택에 비치
		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견본주택에 비치(대상자에 한해 작성) - 거래가격 6억원 이상(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포함)의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작성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주택공급 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필수)(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O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O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및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며, 대상자별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필요 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설치 희망자		O	신청자격 증명서류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O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V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인천도시공사 : https://www.ih.co.kr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최초 주택관리번호 : 2026000404)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번호(1800-0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예정 월 약 1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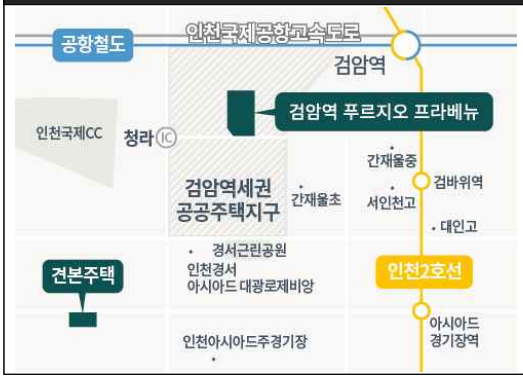
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						
상호명	인천도시공사	㈜대우건설	동부건설㈜	㈜비에스한양	경화건설㈜	브니엘네이처㈜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464번길 61 (가정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한내로 110, 13층 4-비호 (청라동, 청라파이낸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20번길 86-53 (수산동, 1,2층)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841 (원당동, 골든벨프라자 6층)
법인등록번호	124771-0001551	110111-2137895	110111-0005002	110111-0144347	120111-0101981	120111-0185779

시공사					
상호명	㈜대우건설	동부건설㈜	㈜비에스한양	경화건설㈜	브니엘네이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한내로 110, 13층 4-비호 (청라동, 청라파이낸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20번길 86-53 (수산동, 1,2층)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841 (원당동, 골든벨프라자 6층)
법인등록번호	110111-2137895	110111-0005002	110111-0144347	120111-0101981	120111-0185779

4.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현장접수처(서류접수/계약체결)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현장접수처(서류접수/계약체결 장소)



■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249-52 (어울로 75)**

■ **운영시간 : 10:00~17:00**

■ **분양문의 : 1800-0441 (10:00~17:00)**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